

##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기준 변경 예정 안내(2022.10.1.부터 시행)

### □ 제도 개요

- (개요) '20.9.29.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으로 [별표 9]에 따라 **측정대행업자**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중 기술인력 기준이 변경됨
- (시행) '22.10.1.부터 시행

### □ 자격 요건

#### ○ (대기 분야) 대기환경기사

- ☞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,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

#### ○ (수질 분야) 수질환경기사

- ☞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,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수질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

#### ○ (실내공기질 분야) 대기환경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

- ☞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,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·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

#### ○ (악취 분야) 대기환경기사

- ☞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,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

## <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>

**법 제16조(측정대행업의 등록)** ① 대기오염물질,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, 악취, 수질오염물질, 소음·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·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(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**시행령 제12조(측정대행업 등록기준)**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,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.

**시행규칙 제14조(측정대행업의 등록)**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,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
**부칙 <환경부령 제885호, 2020. 9. 29.>**

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9 제1호의 기술능력란의 1)·제2호의 기술능력란의 1)·제4호의 기술능력란의 1)·제5호의 기술능력란의 1)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[별표 9]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개정(안)**

구분	기준	변경
대기 분야	1)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<b>대기 환경기사</b> 중 1명,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, 분석요원 1명	1)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, <b>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,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</b> 중 1명,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, 분석요원 1명
수질 분야	1)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<b>수질 환경기사</b> 중 1명,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, 분석요원 1명	1)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, <b>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,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수질 분야 측정분석업무를 수행한 사람</b> 중 1명,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, 분석요원 1명
실내공기질 분야	1)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· <b>대기환경 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</b> 중 1명, 대기환경산업기사 · 산업위생관리산업 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중 1명, 분석요원 1명	1)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, <b>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,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·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</b> 중 1명, 대기환경산업기사 ·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 기사 중 1명, 분석요원 1명
악취 분야	1)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<b>대기 환경기사</b> 중 1명, 분석요원 1명	1)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, <b>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,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</b> 중 1명, 분석요원 1명